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¹⁾

변 화 순 (선임연구위원)

송 다 영 (연구위원)

김 영 란 (연구위원)

<목 차>

- I. 연구의 목적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III. 이론적 배경
- IV. 연구결과
- V.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방안

1. 연구의 목적

지난 40년간 한국 가족은 구조, 기능 그리고 관계의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가족해체의 지표로 나타나는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신가구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이와 맞물린 3세대 가족 비율의 감소 등이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변형과 안정을 위주로 하는 가족주의에서 개인의 삶과 인격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가족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무엇이

며, 이러한 가족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가족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생활실태를 다룬 연구들이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부부중심가족, 노인가구 등과 같이 개별 가족유형별 삶에 초점을 맞춘 사례연구나, 다양한 가족유형 전반을 포괄하면서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 조사연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가족 연구는 암암리에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를 전형적인 혹은 일반적인 가족의 모델로 전제하는 경향 때문에, 부부중심가족을 표준으로 놓고 다른 가족(구)을 비교하는 연구방식을 취해왔다.

이로 인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에 비해서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기능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높다는 시각 속에서 접근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양한 가족유형을 다양성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하며 가족생활의 질은 가족형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제기 수준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보다 많은 후속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전국적 차원의 가구 단위 조사(변화순 외 4인, 2000)를 기반으로 가족생활의 질과 연관성이 있는 소득수준, 가족활동, 자녀양육 및 교육, 부모부양, 가족원의 건강 및 보호문제, 부부관계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전반적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가족유형별 구체적 복지욕구 및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과 다양한 가족유형간의 비교보다는 각 가족유형별 특성에 기초를 둔 구체적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것은 동일한 가족유형에서도 가족이 처한 환경에 따라 가족생활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의 기본 전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할 지라도 가족생활에 만족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 것처럼, 한부모가족이나 다른 유형의 가구도 이와 같은 경향을 유사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족유형을 부부중심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구, 청장년1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가족유형별 내부적 특성에 기초해 다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가족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원에게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어려움은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A. 연구내용

첫째, 한국 가족의 변화 및 가족복지정책을 정리한다.

둘째, 가족유형별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셋째, 부부중심가족의 생활실태(경제생활, 가족활동, 자녀양육 및 교육, 부모부양, 가족원의 건강 및 보호, 부부관계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지망, 복지서비스 제공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다.

넷째, 한부모 가족의 생활실태(경제생활, 가족활동, 자녀양육 및 교육, 부모부양, 가족원의 건강 및 보호, 가정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지망과 복지욕구, 복지서비스 제공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다.

다섯째, 노인가구의 생활실태(경제생활, 가정생활만족도, 가족원의 건강, 가정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지망과 복지욕구, 복지서비스 제공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다.

여섯째, 청장년1인가구의 생활실태(경제생활, 가족원의 건강, 가정생활만족도, 독신기간 및 어려움), 사회적 지지망과 복지욕구,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다.

일곱째, 소년소녀가장가구의 생활실태(경제생활, 가족원의 건강, 가정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지망과 복지욕구, 복지서비스 제공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다.

여덟째, 가족유형별 가족 기능강화 방안 및 가족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B. 연구방법

문헌연구 :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가족 유형별 실태 및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또 가족유형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원자료 분석 : 보건복지부의 용역연구사업으로 변화순 외 4인(2000)이 전국 16개시·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생활실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가족유형(일반가구, 편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노인1인가구, 청장년1인가구)별 경제생활, 가족생활, 사회적 지원체

제,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등을 조사하여 일반가구에 대비되는 해체가구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대책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복지관 실무자 워크숍 : 가족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에서 제공되는 가족 유형별 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총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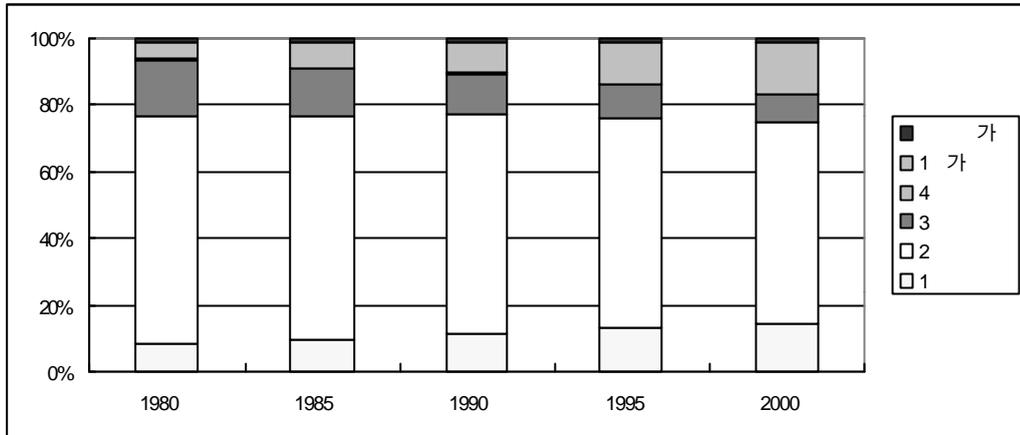
본 연구는 그 후속작업으로서 자료를 가족유형별 비교가 아닌 가족유형 내 비교 분석을 하였다. 부부중심가족은 유배우가구를 중심으로 응답자의 성별, 학력, 연령 및 가구의 세대구성을 4가지 주요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은 선행연구에서는 법정 모부자 세대의 개념을 따랐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구구성상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별, 학력, 연령을 주요 변수로 하였다. 노인가구는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포함하여 응답자의 연령과 가구구성(노인부부가구, 노인단독가구)을 주요 변수로 하여 생활실태를 알아보았다. 청장년1인가구는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을 주요 변수로 하여 생활실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가구는 소년소녀만 사는 가구와 친척과 동거하는 가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II. 이론적 배경

A. 가족의 변화

근대화 이후 한국가족의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1세대 가구의 증가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 직계가족의 감소와 핵가족의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비혼 및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며 결혼이 선택사항이 되는 등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도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 양상은 산업화, 도시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며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족의 세대수별 변화는 <그림 1>과 같다. 지난 20년간 가족의 세대수별 변화는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의 감소와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세대별 가구구성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1980년과 2000년을 비교해 보면, 3세대 가구의 경우 16.5%에서 8.2%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4세대이상 가구는 0.5%에서 0.2%로 감소한 반면, 1세대 가구는 8.3%에서 14.2%로 크게 증가하였고, 2세대 가구 또한 그 비율이 1980년 68.5%에서 2000년 60.8%로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가구의 증가가 주목되는데 1980년과 비교하여 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은 18.9%로 동지역(14.6%)보다 4.3% 포인트가 높았다. 이는 1인가구의 특성이 동지역은 취업, 취학관계로 젊은 층인데 비해 읍면지역은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다섯가구 중 한가구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것을 나타낸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1인가구 구성의 차이는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이동하여 읍면지역은 노인부부 또는 노인1인가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통계청 보도자료, 2001년 10월).

가족형태별 가구구성을 보면 부부+미혼자녀가구가 57.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부가구, 편부모+미혼자녀가구 9.4%의 순이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995년에 비해 핵가족은 2.8%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계가족은 1.2% 포인트 줄어들었다. 구성비 변동을 보면 1995년에 비해 핵가족의 부부가구가 2.2% 포인트, 편부모+미혼자녀가 0.8% 포인트 높아지고 그외 가구들은 전부 낮아져 지속적인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

〈표 III-1〉 가족형태별 가구의 변화

단위 : 천가구, %

가족형태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국 가구수		9,571	11,355	12,958	14,312
핵가족	부부	7.8	9.3	12.6	14.8
	부부+미혼자녀	57.8	58.0	58.6	57.8
	편부모+미혼자녀	9.7	8.7	8.6	9.4
직계가족	부부+양(편)친	0.8	0.9	1.1	1.1
	부부+양(편)친+자녀	9.9	9.4	8.0	6.8
기타가족		14.0	13.8	11.2	10.1

자료 :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B. 다양한 가족복지욕구와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는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지 확보, 고용안정, 교육보장, 생계보장 등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주체가 되는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 및 만족감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조홍식 외, 1997; 최경석 외, 2001). 즉 개별 가족의 복지는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재생산 기능이 온전하게 수행되는가의 여부를 넘어서 가족구성원간 관계의 내용성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차원의 가족복지욕구를 담아내면서 가족원 모두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대체적으로 합의된 것을 살펴보면,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데 있어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개입적 활동(김성천 외, 2000)’으로 ‘가족의 구조, 기능적 역할을 보호하고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구성원 및 전체 가족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변화순 외, 2000)’이다.

그렇다면 가족내 가족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체 가족의 복지와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짐머만(Zimmerman, 1995)은 가족복지(family welfare)란 정책의 목표로서 (i)건강하고 행복하며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ii)사회화와 발달과정 및 현대의 환경적 조건에 따른 산물이며, (iii)생활영역(결혼, 가족, 노동, 여가, 주택, 이웃 등)에서 만족을 이루는 것, (iv)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요구수준이나 위협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적절한 기능들이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는 넓게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와 연결된 사회복지정책의 하위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족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로 되는 양육 및 보호, 정서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가족복지정책은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데, 안정된 소득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부조나 현물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보호가 있다. 동시에 지속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고용안정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가족복지정책의 주요한 범주로 포함된다. 둘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보건과 의료보호도 가족복지정책의 한 축을 이룬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주택관련 정책은 가족원이 생활을 해 나가는 거주지 및 생활터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가족복지정책 내용의 한 축을 이룬다. 넷째, 가족구성원의 보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주요한 가족복지정책으로 간주된다. 아동양육과 교육을 통한 사회화 과정이나 고령화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부양은 대부분의 가족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다섯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화는 물론 생활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간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손상된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각종 정서심리적 지원책도 가족복지정책의 한 범주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나 법, 제도 등은 현존하는 사회구조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족유형이 무엇인가를 가능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의 기준잣대를 제시하기도 한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고려여부나 개방성, 융통성 정도에 따라서 특정 유형의 가족형태는 가족복지정책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발견된다<표 III-2>.

<표 III-2> 가족의 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및 내용

가족의 욕구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및 내용
소득안정	소득보장, 소득공제, 고용안정, 부가급여, 가족(아동수당)
건강 및 보건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주거보장	주거안정 및 주택관련 급여
보호 및 양육	아동양육, 노인부양 및 보호
심리정서적 안정	가족상담 및 치료 서비스
가족가치관 및 인식	가족에 대한 사회적 법제도, 규범 및 인식

가족복지정책을 수혜대상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크게 가족구성원 전체를 위한 정책과 개별 가족구성원을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별 수혜대상이 되는 경우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복지정책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별 수혜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동, 노인, 여성 등이 포함되는데 위의 내용별 범주구분의 네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보호 및 양육'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기존에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수행해 왔던 기능들이거나 가족 내부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와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아동과 노인을 고려한 가족복지정책은 상대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면 여성들을 위한 가족복지정책과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수혜대상별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I-3>.

<표 III-3> 가족복지정책의 수혜대상별 분류

정책 대상	정책 내용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	사회보장(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공제제도, 주택정책, 가정폭력방지책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보육 및 교육, 입양·위탁·시설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경로연금, 취업알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의료·보건지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C. 외국의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현황과 시사점 -가족유형별 사례

서구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원활한 가족생활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990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의 화두는 가족의 '빈곤(poverty)'이며 이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아동과 노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부중심 2세대 가족이나 확대가족(extended family), 한부모가족, 노인가구, 소년소년가장가구, 독신가구를 아우르며 공통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누가 어떻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재생산을 이루어내느냐는 것이다. 이번 절은 각각의 가족유형별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정책적 함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부부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복지정책은 늘어나고 있는 취업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부부중심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복지정책은 조세제도를 통한 접근, 부부관계 자격요건의 완화, 아동과 노인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우선, 가족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변화는 세금징수의 종합과세 원칙에서 개인에 대한 분리과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종합과세 원칙은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과 아동은 생계피부양자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 맞벌이를 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누진세 적용이나 소득공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영국은 결혼한 여성이 일을 할 경우 미혼의 취업여성과는 달리 국가보협급여에서 제외되도록 하역 의료·연금·고용관련 급여의 수급권을 주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이 취업을 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고 여성계로부터 비판이 제기되면서 점차 개인에 대한 분리과세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개인 분리과세는 여성들을 가족생활을 이끌어 가는 경제적 주체로서 자리매김 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 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여전히 아동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세제혜택을 주어 부부간에 재정적인 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조세 감면을 취하고 있는데, 조세감면은 첫째, 자녀부터 시작하지만 자녀가 셋 이상이 되면 최고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조세감면이 가족의 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며, 벨기에는 부양해야 하는 친척이나 아동양육에 드는 비용에 따라 최고 80%까지 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김성천 외, 2000).

둘째, 가족구성원의 개념에 대한 변화로 점차 합법적인 형태의 결혼관계 이외의 배우자관계도 가족관련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 이후 가장 현저한 변화로는 결혼과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통해 자녀를 생산하는 가족들이 줄어들고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배우자 관계가 많아지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숫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럽국가들에서는 가족부가급여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동거)나 법률혼 관계(결혼)에 차등을 두지 않으려는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78년 이래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사회보장 급여에서 합법적인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국에서도 가족단위의 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결혼이나 동거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스웨덴은 동거생활도 전형적인 가족형태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제도화가 되어 있다(김주숙, 1999).

셋째, 아동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상당수의 국가에서 가족복지의 중심축으로 아동의 사회화와 교육을 두고 이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지원은 부양아동의 수,

아동의 출생순위, 교육년수,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가 결정된다. 대체적으로 부양아동의 수가 많으면 지원액이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액은 반드시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영국은 첫째 자녀에 대한 급여가 가장 높은데, 이것은 첫째 자녀양육이 다른 아이들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반면 프랑스는 첫아이는 수당을 주지 않으며 아동수가 늘어날수록 급여내용이 많아진다. 그리스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에서도 아동수가 많을 수록 수당이 늘어난다. 또한 교육연한이 늘어나는 전반적인 현상을 감안하여 자녀가 최종 교육을 마치는 기간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족(혹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18세를 정하고 있지만, 벨기에나 포르투갈, 독일은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복지정책

이혼이나 사별이후 혼자서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해 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한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서 가족생활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해질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 역할수행상의 혼란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위축되기 쉽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당면하고 있는 가족문제에 대처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는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및 보호문제에 대한 지원 등이 있어 왔다<표 III-4>.

경제적 지원으로는 크게 소득보장, 주거지원, 고용지원이 있다. 소득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영국, 스웨덴 등은 일반 부부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아동양육에 대해 경제적 차원에서 최소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영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조라는 생계보조 외에 저소득층 한부모를 위한 소득보조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계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주거지원으로는 주택 자체에 대한 지원과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용에 대한 보조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임대주택에의 우선 입주권나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광열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취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각종 취업훈련과 알선 프로그램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을 위한 보육정책으로는 크게 아동보호 수당제도와 보육서비스의 제공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으로 대별된다. 아동보호수당을 지원하는 스웨덴이나 영국 등은 여성들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아동양육과 연관된 수당을 받아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아동수당제도가 없는 미국 등은 보육시설의 확보와 보육비에 대한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일하는 여성 한부모를 위해서는 자활에 중점을 두면서 보육시설의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남성 한부모는 자녀양육 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용과 연관되어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일방의 배우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연금이나 아동수당, 한부모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의 아동부양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이혼 후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일방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부양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선급하여 양육비를 지불하고 후에 강제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반면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을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에 깔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혼 후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조하여 생물학적 부모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아동부양법(child support act)이 있다.

〈표 III-4〉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미 국	영 국	스 웨 덴	일 본
경제 적 지 원	소득 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FDC TANF Food St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망인 급여 한부모를 위한 아동수당 공공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수당 아동연금 아동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원모가족을 위한 대부 세금공여 및 소득공제 아동수당 및 아동부양수당
	주 거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세대 주택부조 저소득세대 광열비 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급여 난방보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주택우선입주 한부모월세조성제도
	고 용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fare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을 위한 복지 (welfare to work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개호원양성 과부등 직업상담원 배치 직장적용훈련 훈련수당 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직장적용훈련비

	미 국	영 국	스 웨 덴	일 본
보호 및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 자녀부양금 배우자간 책임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보조금 ▪ 아동보호세금공제 ▪ 아동양육보너스 ▪ 보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수당 ▪ 출산급여 ▪ 부모급부금 ▪ 부양료선불 ▪ 양자녀수당/해외아동 입양관련 비용 ▪ 아동보호수당 ▪ 학령전 아동 학교 혹은 탁아소 ▪ 가정탁아소 ▪ 시간제 집단 ▪ 놀이시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지원 위한 단기이용 사업 ▪ 가정양육지원사업 ▪ 보육소입소우선권

자료 : 장혜경 외(2001), '한부모가족 및 실질적인 여성가장가족의 여성을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자료집」.

3. 노인가구를 위한 가족복지정책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노령연금제도가 있으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연금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한 경우 보충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충소득제도가 각국별로 있다. 소득보장과 함께 노인가구들의 삶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주거안정이라 볼 수 있다. 서구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노인들을 시설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가족이나 노인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이나 노인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노인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중 주택보장 및 주거지원은 상당히 체계적이다. 노인들이 일생을 자기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지지 혹은 원조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노인은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단지 8%만이 노인입소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김성천 외, 2000).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생활을 위한 가정간호(Home Nursing)가 발달되어 있으며 수발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서비스 하우스, 그룹 홈, 간호주택, 요양원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 자가 생활 원칙을 지켜가고 있으며 노인가구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집을 담보로 은행이나 부동산 회사가 현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자산활용 프로그램이 있다. 현금은 해당 노인이 사망하거나 주택을 매각할 때 회수되므로 노인가구가 생활을 해나가는데 따른 수리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노인문제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연구소, 1996). 일본도 재가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거동상 편의나 생활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호(care)장치 부착 주택이 있어 유사시 노인이 방치되는 일을 최소한 줄인다.

소득보장과 주택보장이외에도 노인가구의 경제적 기능강화 및 노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에 대한 고용중대 및 지원 방안이 제공되고 있으며, 여가활용과 심리·정서적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인대상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노인가구의 고용을 지속하거나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공동작업장제도, 고령자고용계속 급부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용지원과 더불어 퇴직노인들의 인적 기술을 지역사회 자원활동으로도 활발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한편 노인가구의 가정 내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인가구의 주요 문제라 할 수 있는 건강문제에 대한 지원과 각종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재가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신콜드플랜을 통하여 노인들의 개호(care)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료체계 및 각종 노인대상 사회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건강보호서비스(Home health care service)이외에도 다목적노인센터(Multipurpose senior center)를 설립하여 노인가구의 여가 및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을 하는 노인들에 대한 학대나 방치 등을 막기 위하여 장기치료 옴부즈맨 제도(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도 활용하고 있다<표 III-5>.

<표 III-5> 노인가구를 위한 가족복지정책

		미 국	호 주	스 웨 덴	일 본
경 계 적 지 원	소 득 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령및유족보험(OASDIHI) 보충소득(S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령연금(비각출연금제도) 연금수급 자카드-각종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령연금 보조연금, 부분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령연금 생활보호
	주 거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자산활용 프로그램(Home Equity Conversion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보호시설(호스텔, 요양원) 입주자 분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정책 보호주택(Sheltered Accomodation) 집단주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세대형 공영주택 공영주택 우선입거조치 보호장치부탁 집합주택 특별양호홈 (Home)
	고 용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지역사회 서비스고용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고용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고용계속 급부제도

	미 국	호 주	스 웨 덴	일 본
의료지원 및 개가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호 ▪ 보충적의료보험(SMI) ▪ 가정건강보호서비스 (Home Health Care Service) ▪ Multipurpose Senior Center ▪ 장기치료 음부즈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re제도 ▪ 사설의료보험료 ▪ 다양한 개가보호 서비스 ▪ 가정간호보호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간호 (Home Nursing) ▪ 장기치료 (Long-term Care) ▪ 가정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보건법제정 (1983) ▪ 퇴직자의료보험 제도 ▪ 개호보험 ▪ 싱글드플랜(1995) : 개호에 관한 새로운 보호시스템 구축

4.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많은 국가에서 부모나 돌봐줄 친척조차 없는 아동들은 고아원이나 보육소 등에 맡겨져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일정시기까지 시설보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시설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 형제자매가 시설의 특성이나 구분에 따라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하거나 생이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연령대를 차별화하여 어린 경우에는 입양이나 위탁으로, 일정한 연령이상(예를 들면 14세 이상)의 아동은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여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도입되어 왔다.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14세 또는 16세 이상의 부모없는 아동에게는 독립적인 생활근거를 마련해 주고 취업훈련 및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생활 프로그램 (Independent living progr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없는 혼자 살고 있는 청소년가장을 위한 일자리 구하기, 기술훈련, 직업학교 혹은 전문대학의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기적 주택정착 프로그램(Transitional housing placement program)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최경석 외, 2001). 이것은 부모없이 혼자서 생활을 해 왔던 소년소녀 가장들이 역할모델(role model)의 부재로 향후 가족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에 기초하여 마련된 방안이다.

IV.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동일한 가족유형이라 할지라도 개별가족은 가족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저소득층이나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가 낮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을 중심으로 주어지고 있는 현실과 맥락이 연결된다. 또한 저학력층도 전체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저학력으로 인한 기술의 부재, 직업의 불안정성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족유형별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부부중심가족

부부중심가족은 가족이나 친척과의 식사나 만남은 정기적으로 가지는 반면,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층, 고연령층, 3세대 가구의 여가활동은 더욱 제한적인 편이다. 또한 부부중심가족은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3세대 가구에서 소득이 불충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부모부양이나 가족원의 보호 및 간병과 관련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물론 간병부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역할과 연관된 문제는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양부담이나 역할과중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부모부양이나 가족원 보호에 있어서 역할과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보호시설 및 재가서비스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녀양육문제는 20대와 30대의 연령이 낮은 층에서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세대별로는 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에 비해 2세대 가구의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중심가족의 부부관계만족도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성격차이, 폭력, 외도, 술문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경제적 문제, 부모부양 등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고려여부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부관계만족도 측정 항목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불만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 이외에도 남성배우자에 대한 불만에서 여성은 배우자의 외도, 음주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이중적 문화규범과 과도한 음주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부부중심가족의 가족안정성을 유지하고 이혼 등을 통한

가족의 해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배우자간 의사소통과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IV-1〉 부부중심가족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

항 목	조 사 결 과	대 책 방 향
가족활동	전체적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이 부재한 편임. 저학력, 고연령, 3세대 가구일수록 가족간 만남이나 식사, 모임, 여가활동 공유에 있어 저조함	저학력, 고연령, 3세대가구를 고려한 가족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가족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책 마련
자녀양육	20·30대 부부중심가족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장년층 및 저학력층은 자녀의 인성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
	저연령, 고학력 부부중심가족은 아동보육의 어려움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다양한 시간대 배치
부모부양	고연령(50·60대), 저학력(중졸이하), 3세대 가구의 부모부양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높음	부모부양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 모색
부부관계	여성, 30대 이후의 부부, 저학력 부부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낮으며 이혼고려 생각이 높음. 원인은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여성은 이외에도 외도, 음주 등을 갈등요인으로 지적함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부부관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전반적 사회문화 개선
건강문제 및 간병부담	신체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있었음. 특히 여성과 50·60대의 간병부담이 상당히 높았음	가족원 보호 및 간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정생활 만족도	고연령층이 저연령층 보다, 소득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또 자녀양육문제와 부부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는 가구가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음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속에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함

특히 저소득층 부부중심가족은 부부관계만족도는 물론 청소년기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차원의 부부교육이나 가족관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가족상담센터에서는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관계 상담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적으로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업무도 전문화, 특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 부부중심가족을 위한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경우, 생계부양자가 있다는 전제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점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부부중심가족 중에는 명목상으로는 생계부양자이지만 신체결환을 앓고 있거나 도박, 알콜중독 등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남성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부부중심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B. 한부모가족

<표 IV-2>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

항 목	조 사 결 과	대 책 방 향
소득수준	전반적으로 낮으며, 해체편모가구 가장 낮음. 특히 저학력, 고연령층이 가장 낮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방안
자녀양육문제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한부모가족은 아동보육/교육에, 저학력층은 자녀의 인성지도/학습지도에 어려움	저연령, 저학력 가정을 위한 포괄적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가족활동	저학력층 가족여가활동 부족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편모가구의 가족간 유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편모가구 가족결속력 높음	한부모가족 가족활동프로그램 개발, 건강한 한부모가족 모범사례 발굴
부모부양	저소득 편모가구는 부모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수발 부담 큼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부모부양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 확대
가정생활 만족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편모가족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자녀가 성인이 된 편모가구, 가족활동이 많을수록, 소득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수록 만족도 높음	한부모가족의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소득, 가족활동,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가족원의 건강 및 간병부담	가족내 건강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약값, 병원비 등의 부담이 높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로서비스 지원 및 간병부담 완화 방안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욕구	취업상담 및 기술·기능교육, 방과후 아동지도, 공부방, 아동보육서비스	직업훈련프로그램 활성화, 방과후 아동보육, 다양한 아동보육시설 확대

한부모가족은 전반적으로 생계비 부족 등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한부모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편모가구가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은 미성년자녀편모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인성지도/학업지도, 아동보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미성년자녀편모가구의 경우 가족구성원간 정서적 유대나 생활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격려나 지지가 편모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의 가정생활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부부중심가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부모가족의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고 있었다. 성년자녀편모가구의 가정생활만족도는 다른 한부모가족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활동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시사점을 준다. 즉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경제적 안정이 된다면, 가족과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대안적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편모가구의 경우 가정생활만족도는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더욱 낮았다. 편모가구는 부모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활동 제약에 대한 어려움이 다른 한부모가족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부양이나 수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내의 부재로 인해 부모부양의 책임을 홀로 지게 됨에 따라 생기는 어려움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재가복지, 단기보호시설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가장 바라는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취업상담 및 지원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아동보육서비스 및 방과후 아동지도 등 보육관련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비추어 볼 때, 아동보육시설의 확산과 더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방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위한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건강한 한부모가족 모범사례발굴, 저소득 한부모가족 노인부양에 대한 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지원방안,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활성화,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의 확대 및 다양한 아동보육 시설의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C. 노인가구

〈표 IV-3〉 노인가구의 실태와 개선방안

항 목	조 사 결 과	대 책 방 향
경제생활	전반적으로 기초생계비 부족한 가구가 많음. 특히 여성노인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높음	노인가구를 위한 생계비 지원 방안과 노령수당의 확대방안
가정생활 만족도	노인1인가구는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낮은 가정생활 만족도 보임. 고연령 노인1인가구중이 가장 심각함	노인가구의 경제생활, 의료문제, 심리적 소외를 감소시키기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방안
사회적 지원	노인1인가구는 따로 사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더욱 더 어려운 처지에 놓임. 사회/종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매우 미흡함.	가족 및 종교·사회복지전문기관의 사회적 지원망 확대방안 모색
경제적 지원요구	노인1인가구의 생계비, 약값 및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음	노인가구의 의료문제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료보장비 확대와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욕구	노인전문병원, 무료양로원, 요양시설, 목욕, 간병지원 또는 방문간호, 가사지원서비스 욕구가 높음	다양한 차원의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노인가구는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가 가장 어려운 생활문제였으며 고독, 외로움 등의 심리적 문제도 있었다. 노인가구의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가구나 볼 수 있는 60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어려운 생활문제로 여기고 있었는데, 신체건강상태나 활동능력을 고려해 볼 때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등을 통해 일정하게 사회활동이나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지원책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연령이 높아갈수록 건강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70대 이후의 노인가구는 60대 노인가구에 비해서 건강문제를 가장 커다란 생활상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고연령가구에 대한 건강의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인가구내에도 가구유형별 차이가 있었는데, 노인부부가구가 노인1인가구에 비해서 제반 활동이나 가정생활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구와 노인1인가구 모두 연령이 높아갈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노인1인가구에서 더욱 확연히 두드러진다. 노인부부가구는 노인1인가구에 비해서 따로사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1인가구의 대부분은 여성노인인데, 이들은 노인부부가구에 비해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따로 사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원도 높지 않아서 기초 생계비마저도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노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복지서비스 지원은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실제적인 것이 아니어서 보다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인가구는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D. 청장년1인가구

〈표 IV-4〉 청장년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

항 목	조 사 결 과	대 책 방 향
경제생활	20·3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반면 40·50대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	저소득, 저학력, 고연령층 청장년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방안이 절실히 필요함
가정생활 만족도	저학력의 40·50대는 가정생활만족도가 매우 낮음. 특히 40·50대는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건강문제, 고독 등이 문제로 제기됨	
사회적 지지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학력층 일수록 사회적 지지망 부족함	청장년1인가구에 대한 민간단체, 복지기관, 정부의 지원체계 보완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복지욕구	가사일, 무료급식 및 반찬배달, 간병지원 및 방문 간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차원의 청장년1인가구의 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마련

청장년1인가구는 연령대별로 생활양상이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나 30대의 청장년1인가구는 취학이나 취업 등으로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특성을 지녔다. 반면 40대나 50대는 지속적으로 독신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나 이혼이나 사별이후 독신가구를 형성하게 된 경우 모두 공통되게 소득수준은 물론 생활상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가정생활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40·50대 청장년1인가구중 상당수가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해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40대, 50대의 청장년1인가구는 취업이나 취학 등으로 형성된 20, 30대 1인가구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며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또한 40대나 50대 청장년1인가구중 상당수가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생계비나 약값 및 병원비를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이외에도 청장년1인가구는 가사일이나 무료급식 및 반찬배달, 간병지원 및 방문간호, 취업알선에서 매우 높은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복지욕구는 전체적으로 고학력층 1인가구보다는 저학력층 가구에서 더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고학력층 청장년1인가구는 가사일이나 가족원 보호 및 수발 등을 시장 매커니즘을 통하여 해결하는 반면, 저학력층, 고연령층 청장년1인가구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이러한 방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40·50대 청장년1인가구는 생활문제와 높은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의 지원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현실이다. 즉 60대 이후 노인1인가구는 생활상 어려움이 많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재가서비스나 기타 서비스의 주요대상이 되는 것에 비해 40·50대 청장년1인가구는 실제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의 범주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이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 소년소녀가장가구

〈표 IV-5〉 소년소녀가장가구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

항 목	조 사 결 과	대 책 방 향
경제적 수준	월평균 소득 38만3천원으로 기본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	소년소녀가장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 확대
가족활동	권척과의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여가활동 부족	가족활동 및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가정생활 만족도	권척과의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생활문제로 만족도 매우 낮음	
사회적 지지망	전반적으로 소년소녀가장가구 모두 정서적·물질적 지원이 부족하지만, 특히 권척과 동거하는 경우 물질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정서적·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권척과의 동거상황이 사회적 지원을 막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마련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욕구	후견인·후원사, 학교생활·진로문제상담, 공부방·공부지도, 취업안내	후원자 연결 및 생활문제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 소년소녀가장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마련

소년소녀가장가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초 생계비 부족이라는 절대적 빈곤의 문제인데 월 평균소득이 38만3천원으로 조사대상 가족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부모세대가 없는데서 파생되는 문제로 가족활동의 미흡이나 정서적 기능 부재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활동의 미흡이나 정서적 문제는 소년소녀가장가구가 홀로 살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친척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친척과 함께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가구는 친척과의 동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간의 식사나 만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생활만족도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거가족이 있는 소년소녀가장가구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친척이 대부분 연로하신 조부모이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런데 친척과 함께 사는 소년소녀가장가구는 혼자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가구에 비해 사회적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생활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친척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가구에겐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이며 친척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년소녀단독가구와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특히 후원연결, 학교생활 및 진로문제 상담욕구가 높은 것을 볼 때 경제적 지원 이외에 각종 생활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V.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방안

A.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 및 대책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첫째,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해체가구를 결손이나 낙인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둘째, 각 가구를 가족 단위로 보면서 가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종 사회적 지원 서비스(경제적 지원, 상담 지원, 기타 지원)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서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역할 수행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와 기능강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련 조직 및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둘째와 셋째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B. 가족기능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방안

가족복지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속에서 가족기능 강화와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경제적 지원, 가족지원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경제적 지원방안은 경제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가족지원 서비스에서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이나 가족원의 보호 및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가족상담서비스에서는 가족관계 증진과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상담소의 기능강화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1〉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유형별 지원내용

분 류	지 원 내 용	대 상 가 구
경제적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화 - 자립지원방안 정착 - 취업교육 및 상담	저소득층 가족,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노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각종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다양한 아동보육 시설의 확대 - 포괄적 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부부중심가족, 한부모가족
	- 재가복지지원서비스 확대	노인가구, 한부모가족, 청장년1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노인부양가족
	- 의료보장체계 강화	한부모가족, 노인가구, 청장년1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 후원 활성화 - 청소년상담프로그램 확대 - 공부방 시설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 확대	소년소녀가장가구
가족상담서비스 활성화	- 가족상담소 활성화 · 부부/부모-자녀 의사소통 프로그램 · 가족해체 예방 프로그램	부부중심가족, 한부모가족
	· 이혼/재혼 상담 프로그램	한부모가족, 청장년1인가구
	· 노인상담 프로그램	노인가구, 부부중심가족

C. 가족유형별 가족기능 강화방안

가족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제기된 생활문제와 개별적으로 제기된 생활문제를 토대로 가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기능강화			
	경제적지원	가족지원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부부 중심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가족 공적부조 확립 - 부모부양에 대한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 포괄적 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 다양한 보육시설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해체 예방 프로그램 - 가족상담소 확립 - 부부/부모자녀관계 확립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한부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적부조 확립 - 부모부양에 대한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 포괄적 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 다양한 보육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상담 프로그램 - 부모자녀관계 확립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노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수당의 확대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 프로그램 확대 - 노인전문병원 확대 - 요양시설 - 가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가구 자조그룹, 소일거리 그룹 결성 - 노인상담 프로그램 확대
청장년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교육 및 자립지원 방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가구 여가활동 프로그램확산 - 가사지원서비스 -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신자간 자조그룹, 상담그룹 형성 - 이혼상담 프로그램 확대
소년소녀 가장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지원방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회와의 유대 강화 - 청소년상담시설 확대 - 청소년 방과후 지도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생활 상담소 및 상담접근 용이성

<그림 2> 가족유형별 가족기능 강화방안

참고문헌

- 공세권·조애저·허남영(1995), 「가족결손의 유형별 특징과 가족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만두(1997), 「21세기 한국가족의 문제점과 복지적 대응책」, 『사회복지』, 132 : 7~26.
- 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천·윤혜미(2000),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보건복지부.
- 김승권 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석·이상현(1994), 「소년/소녀가장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란(1995),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 외(1994), 「열린사회와 가족」,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원영애·김성경·김영란·김민정(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보건복지부·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백경희·김현주(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가옥(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경자·윤영숙·최은영(1991),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2001), 「실질적인 여성가장가족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방향과 과제」, 「여성과 가족정책 :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망 세미나 자료집」.
-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통계청(1999), 「한국의 삶의 지표」.
- _____ (각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_____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도숙(2001), 「북구국가들의 여성정책 :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61 : 68~71, 한국조세연구원.
- 허남순(1997), 「이혼가정의 자녀문제 및 대책」, 『21세기 한국가족의 변화와 사회복지대책』,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Benokraitis, N. V.(1993), *Marriage and Family-Change, Choices, and Constraint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 Esping-Andersen, G.(1999),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Hantaris, L.(1994), "Comparing Family Policy in Britain, France and Germany," *Journal of Social Policy*, 23.

Simon, B. L.(1987), *Never Married Women*,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South, S. J., & G. Spitze(1986), "Determinants of Divorce over the Marital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 583~590.

Spanier, G. B, & R. A. Lewis(1980), "Marital Quality :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Stein, P(1981). *Single Life : Unmarried Adults in Social Context*. New York : St. Martin's Press.

Zimmerman(1995), *Understanding Family Policy*, SAGE Publications.